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26호
2. 발 의 자 : 고광민 의원
3. 발의일자 : 2023. 5. 30.
4. 회부일자 : 2023. 6. 5.

II. 제안이유

-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3. 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4.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고광민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826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 사회,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이하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11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 그리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조례에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지정·운영 및 해지, 종합계획, 위원회 구성, 재정지원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왔습니다.
- 그러나 혁신교육지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 유지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은 형태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이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 하였습니다.

[표-1]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청(25개구)	합계
2019	12,500,000 (자치구당 5억)	12,500,000 (자치구당 5억)	14,513,835 (자치구당 5억 이상)	39,513,835
2020	12,500,000 (자치구당 5억)	12,500,000 (자치구당 5억)	14,697,835 (자치구당 5억 이상)	39,697,835
2021	12,500,000 (자치구당 5억)	12,500,000 (자치구당 5억)	15,131,701 (자치구당 5억 이상)	40,131,701
2022	12,500,000 (자치구당 5억)	6,500,000 (자치구당 2억6천)	15,773,242 (자치구당 5억 이상)	34,773,242
2023	13,718,382 (기정예산 10,540,832 2차 추경안 3,177,550)		14,020,557(예정)	27,738,939

○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미래교육지구로 재구조화되었고,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¹⁾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²⁾은 종전의 혁신교육지구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미

1)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지정 현황 (25개 자치구 전부 신청 및 지정 완료)

-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계획(2022.12.13.)
-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계획 및 신청 안내(2022.12.28.)
-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정 알림(2023.02.13.)
-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공동협약식 및 출범식(2023.05.11.)
-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별 개별협약식 진행중(2023.05.11. ~)

2) 대체로 기존의 자치법규와 신 자치법규 간의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고, 제도 그 자체가 신규 양 자치법규 간에 전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폐지·제정방식을 취한다.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354쪽

래교육지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개정조례안은 총 12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와 지정 및 운영,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구성체계는 관련 지침³⁾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바,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조례안의 입법목적⁴⁾을 달성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미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안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에게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본래의 목적과 교육의 중립성(「교육기본법」 제6조)⁵⁾을 준수하도록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4)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99쪽 참조

5)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존의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마을 공동체를 구축함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참여시키는 것을 기조로 출발하였으나,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구성원이 자칫 편향된 사고와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교육의 특성상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교육은 헌법⁶⁾과 법률에 따라 내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정치화는 금지되어야 하는바,

동 규정이 교육감에게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록 선언적 의미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미래교육지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그리고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범위는 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⁷⁾에 따른 중점과제와 동일한 바, 이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의 세부추진과제를 포괄하는 추진 목적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 조례가 기존의 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헌법」제31조 ①~③ (생략)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7)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안)',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23.4.

4)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9조)

- 안 제7조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동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는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미래교육지구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같은 조 제4호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지구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장과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협력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정을 보완한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하고, 정기회는 연 2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은 종전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35명보다 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위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3명의 공동위원장을 부교육감 1명으로 축소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조례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미래교육지구로의 재구조화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

- **이상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